



## 법령정보

### 「식품등 중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-171호, 2009. 12. 2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물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사 및 모니터링에 활용할 시험방법을 신설하고자 「식품 등 중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」을 일부개정고시하였습니다.

#### □ 주요내용

가. 식품 중 기준규격이 미설정된 디펜조퀴트, 아시플루오르펜, 티오설팅, 이소펜포스-메틸, 클로로피크린 등 잔류농약 5종에 대한 시험법 추가(안 제3조제13호, 제14호, 제15호, 제16호, 제17호)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[www.kfda.go.kr](http://www.kfda.go.kr)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